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423

발의연월일: 2025. 3. 27.

발 의 자: 허성무·최민희·김문수

안도걸 • 문정복 • 강유정

박민규 · 김정호 · 서미화

정진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도시가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공공정책에 부응하여 공급(이하 "공익서비스"라고 함)되고 있음. 공익서비스의 주요 목표 중하나로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수준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이하 "보편적 공급"이라고 함)을 들 수 있음.

그러나,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서비스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량과 도시가스 요금을 통제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는 소홀하였음. 보편적 공급의 실현과 높은 수준의 공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이 필요함.

보편적 공급에 관하여는 현행법은 제19조의3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0조의3에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 에 관한 일반적 기준 또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이에 법률안은 보편적 공급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일반적 기준 또는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조항들이 일관 된 체계 아래에서 해석·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행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내부규정인 천연가스 공급규정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산정되어 법적 근거가 취약함. 연동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이른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누적은 국가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을 통한 지원사업 혹은 천연가스 공급규정의 요금 정산 등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음. 누적된 미수금은 한국가스 공사에 경영상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천연가스 수급에도 부정적인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법률안은 "원료비 연동제"를 '도시가스 요금을 국제유가, 환율,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천연가스 도입비용과 일정한 주기로 연동하여 산정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여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미수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두고자 함. 또한 법률안은 미수금 액수가 일정 기준액 이상 누적되거나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상 부담이 중대

한 경우에는 국가가 한국가스공사에 재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한국가스공사에는 재정 지원 요구권을 부여하고자 함.

이상과 같이 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지 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사 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정의 조항에 '보편적 공급', '공익서비스', '원료비 연동제'용어 신설(안 제2조제11호·제12호·제13호)
- 나.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산정함을 명시하고, 국민 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원료비 연동제를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제1항·제2항).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원인제 공자)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명시(안 제20조의6제1항)
- 라. 공익서비스비용은 공공목적의 '도시가스 요금 유지·감면, 도시가스 요금 인상 최소화', '보편적 공급', '원료비 연동제 유보', '국가 특수목적사업' 등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영 손실과 재정 부담(원료비 연동제 유보의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 손실과 재정 부담으로 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20조의6제2항)
- 마. 도시가스사업자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경영 손실에 대해 보상

- 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둠(안 제20조의6제3항).
- 바.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는 재정 지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가스도매사업자에게는 재정 지원 요구권을 부여함(안 제20조의6제4항·제5항).
- 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기관이 공익서비스 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6제6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보편적 공급"이란 가스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 12. "공익서비스"란 도시가스사업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가스공급사업을 말한다.
- 13. "원료비 연동제"란 도시가스 요금을 국제유가, 환율,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천연가스 도입비용(이하 "원료비"라하다)과 일정한 주기로 연동하여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5(원료비 연동제) ①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산정하며 원료비 연동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 급규정으로 정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민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료비 연동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
- 제20조의6(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도시가스사업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경영 손실, 재정 부담 등의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 등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부문 및 주택부문에 대한 공익서비스비용에 한한다.
 - 1.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요인에 불구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유지·감면하거나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함으로써 발생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영 손실
 - 2.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공급을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영 손실
 - 3. 원료비 연동제의 유보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 손실 및 재 정 부담
 - 4. 도시가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원인제공자에게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경영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부문 및 주택부문(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한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원료비 연동제 유보 기간의 도시가스 요금 총액(도시가스 공급량 에 도시가스 요금을 곱한 액수의 누적액을 말한다)과 같은 기간 원료비 연동제의 적용을 가정한 경우의 도시가스 요금 총액의 차액(절댓값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보다 클 것
- 2.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인한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이 중 대할 것
- ⑤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재정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u>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 <신 설></u>	<u>11. "보편적 공급"이란 가스사</u>
	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차별없이 보편적으
	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
	도록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
	<u>을 말한다.</u>
<u><신 설></u>	12. "공익서비스"란 도시가스사
	업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
	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
	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가
	스공급사업을 말한다.
<u><신 설></u>	13. "원료비 연동제"란 도시가
	스 요금을 국제유가, 환율, 세
	금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천연가스 도입비용(이
	하 "원료비"라 한다)과 일정
	한 주기로 연동하여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u><신 설></u>	제20조의5(원료비 연동제) ① 도

<신 설>

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산정하며 원료비 연동제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민

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 한 운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원료비 연동제의 적용 을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 제20조의6(공익서비스비용의 부 담) ① 도시가스사업자의 공익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경 영 손실, 재정 부담 등의 비용 (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 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 등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제3호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공부문 및 주택부문에 대한 공익서비스비용에 한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도시 가스 요금의 인상 요인에 불구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유지 • 감면하거나 도시가스 요금 의 인상을 최소화함으로써 발생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영 손실

- 2.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 란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공 급을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영 손실
- 3. 원료비 연동제의 유보에 따 른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 손 실 및 재정 부담
- 4. 도시가스사업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국가의 특수목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 는 비용
-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원인제공 자에게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 른 경영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부문 및 주택부문(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한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도메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실시하여야 한다.

- 1. 원료비 연동제 유보 기간의 도시가스 요금 총액(도시가스 공급량에 도시가스 요금을 곱한 액수의 누적액을 말한다) 과 같은 기간 원료비 연동제의 적용을 가정한 경우의 도시가스 요금 총액의 차액(절 댓값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보다 클 것
- 2.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인한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상 부 당이 중대할 것
- ⑤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 른 재정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익 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 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